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다양화·전문화되는 사회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를 국가자격으로 발급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5887호, 시행 2020.12.12.)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 자격증 발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사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별표 1)
- 나. 사회복지사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자가 12주 이상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경우를 삭제(별표 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등급별”을 “등급별·영역별”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 영역별 자격기준(제2조제1항 관련)

1.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1 급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2 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비 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	자격기준
의료·학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통과한 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u>등급</u> <u>별</u>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 략)	제2조(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 등) ①----- ----- <u>등급</u> <u>별 · 영역별</u>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014